##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10

발의연월일: 2020. 9. 1.

발 의 자: 강선우·최혜영·황운하

홍성국 · 김경만 · 이수진

오영환 · 고영인 · 신정훈

윤미향 · 인재근 · 서영석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 사건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역시 재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닌별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제52조제1항·제2항 및 제53조의2).

법률 제 호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격리된 피해아 동을 일정기간 입소시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제3호의2의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대피해아동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의2.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
	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격리된
	피해아동을 일정기간 입소시
	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②
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u>&lt;단서 신설&gt;</u>	<u>다만, 제1항제2호·제3호·제3</u>
	호의2의 아동복지시설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
	<u>여야 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u>&lt;삭 제&gt;</u>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	
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